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203 발의연월일: 2021. 1. 6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강병원 · 기동민

김민철 • 김수흥 • 문진석

안호영 · 이용빈 · 인재근

임종성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탁하려는 경우 등의 신고가 수리(受理)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선원의 인력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그업무를 수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면, 해양항만관청은 그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(안

제112조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2조(선원관리사업) ① ~ ④	제112조(선원관리사업) ① ~ ④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에 따
	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
	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
	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<u>⑤</u> ~ <u>⑦</u> (생 략)	$\underline{6}$ \sim $\underline{8}$ (현행 제5항부터 제7
	항까지와 같음)